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전번호 제2018 - 47 - 429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의 결 일 2018. 9. 4.

주 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취급자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할 것

나.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할 것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하고,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만기별 1회 이상 변경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 운용할 것

라.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할 것

마.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보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할 것

2. 피심인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은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1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판매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사업자로 같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28조 등의 규정이 준용되며,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의 매출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평 균
매출액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사업개시일 :)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이용자 민원(개인정보 불법 보관)이 국민신문고에 접수(2018.2.28.)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현장조사(2018.4.5.)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피심인은 대리점으로 개의 직영 소매매장을 운영하면서 이동전화 가입자의 부가서비스 신청누락 등의 재검증 목적으로 각 매장별로 부여된 구글 드라이브에 2017.04월부터 2018.04.05.까지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업로드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조사과정 중 증거인멸 목적으로 피심인이 운영하는 소매매장의 개
구글 드라이브 계정을 삭제하고, 개 구글 드라이브 계정()은 일부
삭제한 사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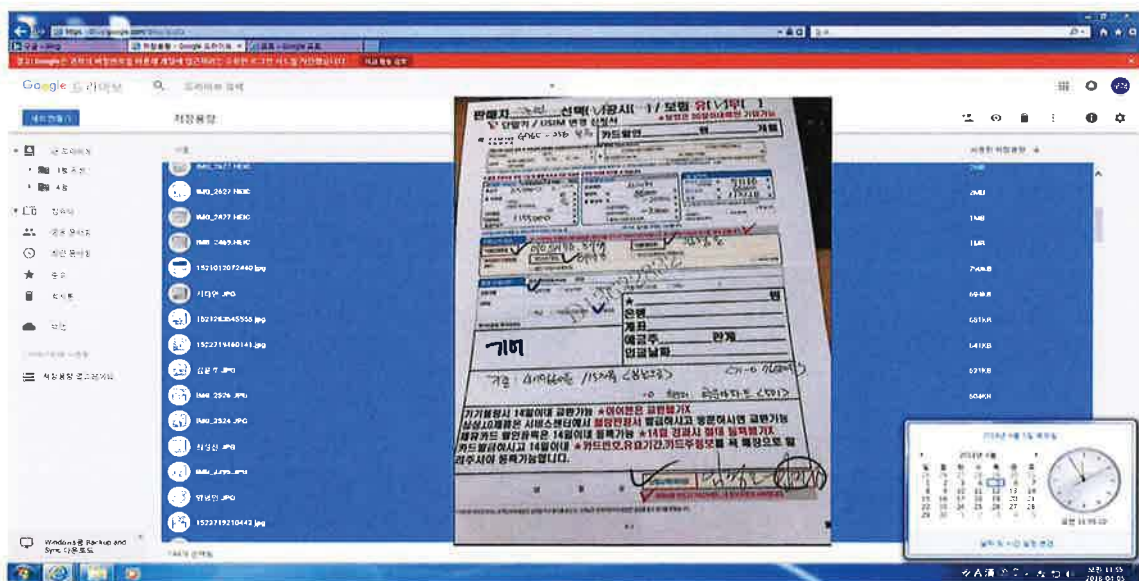
[표] 피심인의 각 소매매장의 구글 계정 리스트

소매매장	구글 계정	소매매장	구글 계정
	MD136220330		MD136220367
	MD136220331		MD136220368
	MD136220335		MD136220372
	MD136220337		MD136220375
	MD136220344		MD136220376
	MD136220345		MD136220378
	MD136220348		MD136220379
	MD136220357		MD136220380
	MD136220360		MD136220381

[그림] 조사과정 중 삭제된 피심인의 구글 드라이브 계정() 일부



[그림] 피심인의 구래지점 구글 드라이브에 보관중인 개인정보 파일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접근통제{정보통신망법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1) (접근권한 부여·말소) 피심인은 구글 계정의 비밀번호는 월1회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점장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있으나,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접근권한 기록보관)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 권한 부여 및 변경 또는 말소에 관한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비밀번호 작성규칙) 피심인은 실태조사(2018.4.5.) 당시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는 모두 “13622715”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사항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지 않고 이를 적용·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의 보관 및 점검{정보통신망법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을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구글 계정에 접속한 개인정보취급자가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서 등 개인정보를 조회, 다운로드한 기록 등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않았고,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한 사실이 없다.

다.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중 목적을 달성한 경우}

피심인은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이동전화 가입자의 가입신청서 최소 35건을 파기하지 않고, 구글 드라이브에 보관한 사실이 있다.

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 7. 17.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18. 7. 27. 의견을 제출하였다.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제2호)’,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제3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제1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감독(제1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3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4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제4조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제8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제1호)’,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제2호)’,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제3호)’ 사항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보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2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전보 또는 퇴직, 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계정 등 접근권한의 변경·말소 등이 필요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불완전한 접근권한의 변경 또는 말소 조치로 인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제8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적용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는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지지 않는 자가 추측하거나 접속을 시도하기 어렵도록 문자, 숫자 등으로 조합·구성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번호 등을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고시 제4조제3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 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거나 수기로 작성한 관리대장 등에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 등에는 신청자 정보, 신청 및 적용 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사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고시 제5조제1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개인정보의 조회, 정정, 다운로드, 삭제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속 및 운영, 비정상적인 행위 등 이상 유무의 확인을 위해 i)식별자(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ID 등), ii)접속일시(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시점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점) <년-월-일, 시:분:초>, iii)접속지(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컴퓨터 또는 서버의 IP 주소 등), iv)수행업무(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등을 포함하는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고시 제5조제3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i)정기적으로 접속기록 백업을 수행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장치에 보관, ii)접속기록을 수정 가능한 매체(하드디스크, 자기 테이프 등)에 백업할 때에는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별도의 장비에 보관·관리, iii) 다양한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 기술의 적용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제1항 단서는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해설서」는 법 제29조제1항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 위탁 시에도 위탁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정해 파기 사유가 발생하면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접근통제{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1) (접근권한 부여·말소) 피심인이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 고시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2) (접근권한 기록보관)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권한부여 및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 고시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3) (비밀번호 작성규칙)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사항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지 않고 이를 적용·운영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4호, 고시 제4조제8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의 보관 및 점검{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을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의 DB 및 관리자페이지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아니하고,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행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고시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중 목적을 달성한 경우}

피심인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처리 위탁받은 통신서비스 판매 및 가입이 완료되어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이용자 개인정보를 최소 35건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구글 드라이브에 보관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중 목적을 달성한 경우)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 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접근 통제	§28①2호	§15②1호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말소하지 않은 행위(고시§4②)
	접근 통제	§28①2호	§15②1호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권한 부여·변경·말소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고시§4③)
	접근 통제	§28①2호	§15②4호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운영하지 않은 행위(고시§4⑧)
	접속 기록	§28①3호	§15③1호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작성하여 월1회 이상 확인·감독하지 않고, 6개월 이상 보존·관리하지 않고,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장치에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행위 (고시§5①·③)
	미파기	§29①1호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컴퓨터 등에 보관한 행위

IV.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취급자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할 것 2)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할 것 3)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하고,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운용할 것 4)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할 것 5)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장치에 보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할 것

나. 피심인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1항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인 1,000만원을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너. 법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3호	1,000	2,000	3,0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증거인멸·조작, 허위 정보 제공 등 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 기타 위반행위의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 행위가 2개이고, 조사과정 중 자료삭제 등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환경, ▲사업규모와 자금 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 조사협조와 자진시정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가중	감경	최종 과태료
§28①2·3호	1,000만원	500만원	없음	1,500만원
계				1,500만원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벌 칙

피심인이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3조제1의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심인의 경우 ▲위반행위가 최초 적발된 점, ▲해당 사업자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시정명령만을 부과하고 향후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처리한다.

V.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및 제76조제1항제3호(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9월 4일

위원장 이 효 성 (인)

부위원장 허 욱 (인)

(국회 참석 관계로 회의 불참)

위원 김 석 진 (인)

위원 표 철 수 (인)

위원 고 삼 석 (인)